

# 이랜드월드 자율준수편람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본 문서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공개, 사용, 복제, 유출 등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관리책임자	제/개정	

	작성	검토	승인
결 제			

## ◆ 발간사

이랜드월드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4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을 제정하였고, ESG경영원칙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Compliance)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였고, ESG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단순한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와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최고경영자 직속 조직으로 CP 협의회를 신설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경과 및 효과성 평가를 심의 및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지원을 통해 Compliance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담당 조직을 신설하였고, 자율준수사무국을 CEO직속조직으로 배치하여 구성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돕고자 정기적인 교육과 CP Letter 발행,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지침서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꾸준히 발간하여 Compliance 실천사항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개정을 통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14년 1차 제정 이후 법령 제·개정 내용 및 심결례·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구성원의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지침 및 Q&A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이 구성원들의 업무 지침서로서 실제 업무에 폭 넓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구성원들이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정과 충실한 준법지침서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거래준법경영 실천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바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2024.07**

**이랜드월드 자율준수관리자  
이미지**

## ◆ 공정거래자율준수 CEO 선언문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이랜드월드는 나눔, 바름, 자람, 섬김의 이념을 근간으로 바른 경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많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상생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나라 대표 패션기업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우리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국내 최고의 패션기업에서 세계 최고의 패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회사 내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 형사상 책임 및 각종 행정 상의 제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 및 이로 인한 심각한 이미지 타격으로까지 이어져 회사의 지속 경영의 중요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법령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 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경쟁질서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만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임을 잘 아는 저희 이랜드월드는 수익을 창출하되, 공정거래법령준수를 통하여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의 준법의지와 정책을 실천하고자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인** 바, 업무에 있어 공정거래의 자율준수 문화가 회사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철저한 이해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 표 이 사**  
**최 윤 식, 최 종 양**

## ◆ 이랜드월드 임직원을 위한 자율준수편람 사용법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이랜드월드 구성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Guide-Book 입니다.

구성원들은 자율준수편람에 수록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개요', '최신 위반 사례/판례', '위반 시 제재 절차/기준'을 통해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정거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질의 응답', 'Check-List' 등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법 위반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준수편람이 다루고 있는 법규

자율준수편람은 구성원들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 자율준수편람 활용법

구성원들은 총 4단계로 자율준수편람을 활용하여,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2	위반 시 제재를 알아보기
3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례 또는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기
4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점검을 하기

### 자율준수편람 구성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 최신

사례/판례

위반 시 제재 절차/기준 질의

응답

업무 Check List

### 자율준수편람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CP 이랜드그룹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이랜드넷 법인게시판 공정거래 CP 탭

◆ 공정거래자율편람 개정이력

구분	시기	주요개정 내용
최초 발간	'2014.03	불공정거래행위 발간사 등 주요내용 최초 정립
1차 개정	2024.07	대리점법, 하도급법 추가
2차 개정	2024.11	약관법 표시 광고법 추가

# 목차

◆ 발간사.....	2
◆ 공정거래자율준수 CEO 선언문.....	3
◆ 이랜드월드 임직원을 위한 자율준수편람 사용법.....	5
◆ 공정거래자율편람 개정이력.....	7
<b>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전 임직원]</b> .....	<b>12</b>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12
1.1 CP 운영의 필요성.....	12
1.2 CP 핵심 8대 요소.....	12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13
2.1 공정거래법 및 필수 법규.....	13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13
3. CP 등급평가제도.....	13
3.1 평가기관.....	13
3.2 평가절차.....	14
3.3 평가등급.....	14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15
4.1 사전적 인센티브.....	15
4.2 사후적 인센티브.....	15
5. 이랜드월드 CP (Compliance Program) 소개.....	16
5.1 CP 운영조직.....	16
5.2 CP 운영현황.....	16
<b>제2절 공정거래법의 이해 [전 임직원]</b> .....	<b>18</b>
1. 공정거래법 개요.....	18
1.1 공정거래법이란.....	18
1.2 관련용어.....	18
1.3 공정거래법의 체계.....	18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9
2.1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19
2.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20
2.3 위반시 제재 조치.....	22
2.4 면책 및 보상제도.....	23
1) 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	23
2) 신고포상금 제도.....	23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영업, 구매, 생산] ..... 24**

- 1. 거래 거절 ..... 24
  - 1.1 개요 : 거래거절의 정의 ..... 24
  - 1.2 위법한 행위 유형 ..... 24
  - 1.3 최신 사례 ..... 25
  - 1.4 질의 응답 ..... 26
  - 1.5 업무 Check List ..... 26
- 2. 거래 강제 ..... 26
  - 2.1 개요 : 거래강제의 정의 ..... 27
  - 2.2 위법한 행위 유형 ..... 27
  - 2.3 최신 사례 ..... 28
  - 2.4 업무 Check List ..... 29
- 3. 거래상지위 남용 ..... 30
  - 3.1 개요 :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 30
  - 3.2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 ..... 31
  - 3.3 업무 Check List ..... 37
- 4. 구속조건부 거래 ..... 38
  - 4.1 개요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38
  - 4.2 유형 ..... 38
  - 4.3 최신 사례 ..... 39
  - 4.4 업무 Check List ..... 40
- 5. 부당지원행위 금지 ..... 40
  - 5.1 개요 : 부당지원행위 ..... 40
  - 5.2 유형 ..... 41
  - 5.3 위법성 판단 기준 ..... 42
  - 5.4 최신 동향 및 사례 ..... 42
  - 5.5 업무 Check List ..... 44
-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 44
  - 6.1 개요 ..... 44
  - 6.2 부당지원행위와의 비교 ..... 44
  - 6.3 행위유형 ..... 45
  - 6.4 안전지대 ..... 45
  - 6.5 부당성 판단 기준 ..... 46
  - 6.6 최신 사례 ..... 46
  - 6.7 업무 Check List ..... 46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제 [영업, 구매, 생산] ..... 48**

- 1. 부당한 공동행위 ..... 48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48
  - 2.1 합의 ..... 48
  - 2.2 경쟁제한성(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 49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 49

3.1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49
3.2 경성 공동행위 .....	49
3.3 연성 공동행위 .....	51
4. 위반시 제재 .....	52
4.1 시정조치 .....	52
4.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52
4.3 과징금 .....	52
4.4 벌칙 .....	53
5. 신고자 감면 및 보상제도 .....	53
5.1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	53
5.2 정보누설 금지 등 .....	54
5.3 신고포상금제도 .....	54
6. 부당한 공동행위 Check List.....	54

## 제5절 대리점법 [영업]

◆ 발간사 .....	2
◆ 공정거래자율준수 CEO 선언문 .....	3
◆ 이랜드월드 임직원을 위한 자율준수편람 사용법 .....	4
◆ 공정거래자율편람 개정이력.....	5

##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전 임직원]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12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	13
3. CP 등급평가제도 .....	13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	15
5. 이랜드월드 CP (Compliance Program) 소개 .....	16

## 제2절 공정거래법의 이해 [전 임직원] .....

1. 공정거래법 개요 .....	17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18

##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1. 거래 거절.....	23
1.1개요 : 거래거절의 정의 .....	23
1.2위법한 행위 유형.....	23
1.3최신 사례.....	24
1.4질의 응답.....	25
1.5업무 Check List .....	25
2. 거래강제 .....	26
2.1개요 : 거래강제의 정의 .....	26
2.2위법한 행위 유형.....	26
2.3최신 사례.....	27

<b>3.</b>	<b>거래상지위 남용</b> .....	<b>29</b>
3.1	개요 :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	29
3.2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 .....	30
3.3	업무 Check List .....	36
<b>4.</b>	<b>구속조건부 거래</b> .....	<b>37</b>
4.1	개요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37
4.2	유형37 .....	
4.3	최신 사례 .....	38
4.4	업무 Check List .....	39
<b>5.</b>	<b>부당지원행위 금지</b> .....	<b>39</b>
5.1	개요 : 부당지원행위 .....	39
5.2	유형40 .....	
5.3	위법성 판단 기준 .....	41
5.4	최신 동향 및 사례 .....	41
5.5	업무 Check List .....	43
<b>6.</b>	<b>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b> .....	<b>43</b>
6.1	개요43 .....	
6.2	부당지원행위와의 비교 .....	43
6.3	행위유형 .....	44
6.4	안전지대 .....	44
6.5	부당성 판단 기준 .....	45
6.6	최신 사례 .....	45
6.7	업무 Check List .....	45
<b>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제 [총무, 구매, 리테일]</b> .....		<b>46</b>
<b>2.</b>	<b>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b> .....	<b>46</b>
2.1	합의46 .....	
2.2	경쟁제한성(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	47
<b>3.</b>	<b>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b> .....	<b>47</b>
3.1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47
3.2	경성 공동행위 .....	47
3.3	연성 공동행위 .....	49
<b>4.</b>	<b>위반시 제재</b> .....	<b>50</b>
4.1	시정조치 .....	50
4.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50
4.3	과징금 .....	50
4.4	벌칙51 .....	
<b>5.</b>	<b>신고자 감면 및 보상제도</b> .....	<b>51</b>
5.1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	51
5.2	정보누설 금지 등 .....	52

5.3 신고포상금제도 .....	52
6. 부당한 공동행위 Check List.....	52
<b>제5절 대리점법 .....</b>	<b>54</b>
<b>1. 대리점과 대리점법거래의 개념.....</b>	<b>54</b>
1.1 대리점거래의 정의.....	54
1.2 대리점법 적용대상.....	54
<b>2. 공급업자의 의무.....</b>	<b>54</b>
2.2 계약서 제공 의무 .....	55
2.3 계약서 보관의무.....	55
2.4 질의 응답.....	55
2.5 업무 Check List.....	55
<b>3.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b>	<b>56</b>
3.1 개요 .....	56
3.2 구입강제행위의 금지 .....	56
3.3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57
3.4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57
3.5 불이익 제공 금지 .....	58
3.6 경영활동 간섭 금지.....	58
3.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59
3.8 보복조치 금지 .....	59
3.9 업무 Check List.....	59
<b>제6절 하도급법.....</b>	<b>62</b>
<b>1. 하도급부문 개념.....</b>	<b>62</b>
1.1 하도급거래의 정의.....	62
1.2 하도급법 적용대상.....	62
<b>2. 하도급법 적용 대상.....</b>	<b>63</b>
2.1 하도급거래의 정의.....	63
2.2 기타 하도급거래.....	63
<b>3. 사업자의 의무 .....</b>	<b>64</b>
3.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전의무.....	64
3.2 서면 발급 시기 .....	64
3.3 기재사항 .....	65
3.4 서류보존 의무 .....	65
3.5 보존기간 .....	65
3.7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66
<b>4. 하도급법상 금지행위 .....</b>	<b>67</b>
4.1 부당한 특약 금지 .....	67
4.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67

<b>5. 질의응답 .....</b>	<b>68</b>
5.1 사례 .....	68
<b>6. 하도급거래 유형별 체크리스트 .....</b>	<b>70</b>
.....	<b>56</b>
1. 개요 .....	56
2.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	56
2.1 부당한 표시·광고 .....	56
2.2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주요제도 .....	60
3. 제재조치 .....	62
3.1 행정적 제재 .....	62
3.2 벌칙 .....	62
4.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	62
5. 질의응답 .....	63
6. 표시광고 Check-List 및 유의사항 .....	67

##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전 임직원]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1.1 CP 운영의 필요성

CP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해외선진기업과 국내 선도기업들은 위험관리차원에서 CP제도를 도입, 정착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투명경영, 윤리경영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등의 혜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 CP 핵심 8대 요소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적 지원하여야 합니다.

##### 3)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자율준수 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포함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하며, 감시·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필수 법규**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을 의미합니다.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이랜드월드는 2014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이랜드월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운영규정의 구성]**

-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직무, 권한, 임면 관련 규정
- 2) 자율준수 모니터링 실적의 이사회 보고의무 규정
- 3) 내부 제보시스템 운영
- 4) 자율준수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제규정 위반시 제재절차 마련
- 6) 자율준수 관련 문서 관리체계 구축 등

**3. CP 등급평가제도**

**3.1 평가기관**

평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3.2 평가절차

CP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합니다.

평가단계	세부 내용
1단계(서류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현장평가)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CP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최종등급 결정
등급부여 여부 대상 확정	평가신청기업 중 등급 보류 및 미 부여 대상 확정

### 3.3 평가등급

등급	정의
AAA(최우수) 90이상~100미만	CP구축 및 운영, CP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우수) 80이상~90미만	CP구축 및 운영, CP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A(비교적 우수) 70이상~80미만	CP구축 및 운영, CP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보통) 55이상 7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C(미흡) 40이상 55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D(매우 미흡) 0이상 4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CP의 실질적 운영수준에 따라 CP등급을 8등급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됩니다.

##### 4.1 사전적 인센티브

CP등급	직권조사 면제	적용대상
A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제45조(단, 부당지원행위 제외)</li> <li>▶ 대리점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li> </ul>
AA	1년 6개월	
AAA	2년	
<p>&lt;인센티브 적용 제외&gt;</p> <p>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4.2 사후적 인센티브

CP등급	위반사항 신문 공표	적용대상
A	공표크기, 매체 수를 1회 한정하여 1단계 하향 공표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단, 부당공동행위 제외)</li> <li>▶ 표·신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li> </ul>
AA		
AAA		
<p>&lt;인센티브 적용 제외&gt;</p> <p>CP 업무 담당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타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된 경우(부당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 불문)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경고 이상,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여  누계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p>		

## 5. 이랜드월드 CP (Compliance Program) 소개

### 5.1 CP 운영조직



### 5.2 CP 운영현황

구분	검토주기
1) 이사회 보고	반기별
2) 자율준수위원회 보고	매월
- 연간 CP 관리 및 감사 계획 및 결과	연 1회
- CP 관리 KPI 결과 보고	연 1회
- CP 주요 안건 및 이슈사항 보고	매월
- CP모니터링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	연 1회
- 정기 준법경영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	반기별
- CP운영 현황 보고 (주요이슈, 교육결과, CP점검 등)	매월
3) 인사위원회 보고 (제재 및 포상)	반기별
4) 제보 특별 감사 결과	매월

## 제2절 공정거래법의 이해 [전 임직원]

### 1. 공정거래법 개요

#### 1.1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 1.2 관련용어

##### 1) 사업자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봅니다(제2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서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판결 참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거래나,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거래에 관한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된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업무를 행하는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2) 약칭 설명

본 편람에서는 아래와 같이 약칭을 활용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정거래법 시행령

#### 1.3 공정거래법의 체계

공정거래법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 별로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 집중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7장 사업자단체, 제8장 전담기구,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3장 적용 제외, 제14장 보칙, 제15장 벌칙으로 나뉘어 집니다.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 불공정약관거래, 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2.1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1) 위법성 심사 기준

##### (1) 공정거래 저해성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의 의도·목적, 경쟁관계의 실태,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위법성 심사기준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즉 '공정거래 저해성'을 들고 있습니다(심사지침Ⅲ. 1).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경쟁제한성'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저해성의 판단은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의도나 거래상대방의 예측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의 의미만 있습니다.

##### (2)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각 행위 유형별 구체적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는 법규상 요건에 해당하면 공정거래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는 법규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추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며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합니다.

구별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정당한 이유 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li> <li>- 차별적 취급(계열회사를 위한 차별)</li> <li>- 경쟁사업자배제(계속적 부당염매)</li> <li>- 재판매가격유지행위</li> </ul>
부당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li> <li>- 차별적취급(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집단적 차별)</li> <li>- 경쟁사업자배제(일시적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li> <li>-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li> <li>- 거래강제(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li> <li>-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li> <li>- 구속조건부 거래(배타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li> <li>-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거래처이전 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li> <li>-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금지원·부당한 자산 및 상품 등 지원·부당한 인력지원·부당한 거래단계 추가)</li> </ul>

**2)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2).

안전지대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적용되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 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에는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이하에서는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중 주요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계속적 부당염매
		일시적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거래방해에 의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구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2.3 위반시 제재 조치

사업자가 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경우 제재 조치는 크게 행정, 민사, 형사적 제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위반시 제재 조치
행정적 제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공정거래법 제49조)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단,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지원행위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단,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민사적 제재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사업자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09조)

구분	위반시 제재 조치
형사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단,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됨,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

## 2.4 면책 및 보상제도

### 1) 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이 감면·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과징금	시정 조치
조사개시 이전	최초 신고자	필수적 면제	필수적 면제
	2번째 신고자	필수적 50% 감경	임의적 감경
조사개시 이후	최초 조사협조자	필수적 면제	필수적 감경·면제
	2번째 조사협조자	필수적 50% 감경	임의적 감경

### 2) 신고포상금 제도

-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참가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제3자의 범위: 공동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자, 참가사업자의 내부직원이나 퇴직 임직원 또는 일반인 등
- 포상금액: 최고 30억원
-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10억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1. 거래 거절

#### 1.1 개요 : 거래거절의 정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2 위법한 행위 유형

-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갱신거절행위도 거래거절의 행위 유형으로써 금지됩니다.  
예외 :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거래 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금지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제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원 재료를 직접 생산, 조달하려는 완제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 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타 회사에게 무담보거래 및 외상기일 연장 특혜를 제공하다가 그 외상대금의 증대에 따른 채권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담보제공 요구나 공급물량감축 및 외상기일 단축 등을 통한 외상대금감축 등의 조치
-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가맹사업자의 지정된 상품이 아닌 상품의 비치, 판매와 허위인터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1.3 최신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8누76721 판결**

스크린골프 가맹점을 운영하는 A사가 실질적인 영업지역 보호 등을 위하여 가맹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만 공급하고 비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은 행위가 거래조건 차별,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A사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가맹전용상품의 공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의 일환인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 전용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특정 사업자에 대한 것인 점 등을 살펴보면 A의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252호. 2020. 8. 24.**

각 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업무용 표준오피스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입찰에서 B사는 자신의 업무용 표준오피스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을 공급받아야만 입찰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급자증명원 등 관련 서류의 발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대방이 입찰에 탈락하여 교육청이 발주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입찰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B사 이외에는 대체거래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B사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공급자증명원 발급거부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조치함

#### 1.4 질의 응답

**문1:** 협력업체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의 위법 여부?

**답 :** 협력업체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위법하지 않음. 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정하게 합의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함.

**문2:** 당사의 판매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조기단산)해야 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답 :**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기간(6개월 전 경고성 문서 발송, 3개월 전 정식 거래중단 알림 문서 발송)을 두고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거래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손해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보상해 주어야 함.

#### 1.5 업무 Check List

- 1) 거래거절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 2) 거래거절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하였는가?
- 3) 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지 않았는가?
- 4)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는가?
- 5)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는가?
- 6) 자기의 상품과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않는가?

## 2. 거래강제

### 2.1 개요 : 거래강제의 정의

거래강제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45조 제1항 제5호).

거래강제의 유형으로 '끼워팔기', '사원판매'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습니다.

#### 왜 금지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됩니다.

### 2.2 위법한 행위 유형

#### 1)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자신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용하여 부대물품이나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 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 특허 등 지적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위

#### 다음은 범위반이 아닙니다.

- 어떠한 상품에 부수하여 다른 상품을 파는 것이 그 상품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예 : 렌터카와 보험, 프린터와 잉크
- 당해 상품시장에서 그러한 통합판매행위가 널리 행해져서 그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상 관행으로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두 상품 또는 용역을 따로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 파는 경우

#### 2)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원판매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므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을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통계를 통해 판매를 독려하는 경우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 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2.3 최신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23-048호**

- A전자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매출증대, 부진재고 해소 등 경영실적을 개선할 목적 하에 주기적으로 자기의 임직원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제품들에 대한 사원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판매 목표 할당, 중간현황 비교·점검, 실적의 인사평가 반영 예고 및 실행, 상품의 강제할당 등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A전자의 행위가 소속임직원들에게 고용관계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불공정 경쟁수단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불공정 경쟁수단에 해당하는 반면, A전자의 행위는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구매 또는 판매를 강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효율성이 증대되었거나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무구조 등을 볼 때 부도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판매 활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A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함

##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44744판결

- B방송사는 수능시험 관련 교육방송을 하면서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총판 평가 지표를 설정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대해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 정도의 점수를 배정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총판별로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 지역을 제한함,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B방송사가 총판 간의 경쟁을 차단하고,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판매 노력을 할 유인을 없애는 불공정 행위를 하였다고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음(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6-024호)
- B방송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B의 행위가 거래강제에 해당함을 인정함

##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029호

- C호텔앤리조트 회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6개 콘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 시 조식이 무료라고 안내하였지만, 실제로는 3년여간 조식쿠폰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여 약 120억원 규모의 쿠폰을 판매하면서 무료제공을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식쿠폰 의무 구입을 강제함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들에게 객실이용권과는 별개의 상품인 조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조식요금을 제외한 요금으로 객실을 예약·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콘도 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함

## 2.4 업무 Check List

-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2) 거래상대방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구입을 강요하지 않는가?

- 3)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제품에 우리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다른 제품을 강제로 끼워 구입하도록 하면서 이럴 거절하면 인기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4)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을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관리하지는 않았는가?

### 3. 거래상지위 남용

#### 3.1 개요 :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거래상 지위남용은 왜 금지되나요?

현실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됩니다.

#### 1) 거래상 지위 여부

- 지속적인 거래 관계의 존재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판단 합니다.

#### 2) 위법성 판단 기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3)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4)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3.2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

#### 1) 구입강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랑”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각호의 경우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됩니다.

- (1) 본사와 협력 업체 또는 대리점 - 본사
- (2) 대형소매점(유통점)과 입점 업체 - 대형소매점
- (3)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 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특정사업자(유명상표 품 공급자)
- (4)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특정사업자(원재료나 부품 공급자)
- (5) 특정사업자와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특정사업자)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란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에게 구입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서비스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도, 소매업자나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 소매업자나 대리점이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예를 들어 가맹본부(또는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주(대리점주)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또는 대리점사업)의 목적과 계약의 내용,

가맹사업(또는 대리점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주(대리점주)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대리점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됩니다.

- **최신 사례**

**[사례1 - A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A는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를 A또는 A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입,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는 A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구매강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A가 가맹점주에게 주방기기를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것과 인테리어공사를 A가 지정한 업체에게만 의뢰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이므로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 B유업의 구입강제 사건]**

B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20억)을 부과하고 주요 임직원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 구입강제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취소판결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익제공을 강요했는지는 아래 경우로 판단하지만, 사업자가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 (2)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업계의 통상적 거래 관행, 이익제공의 성격 등에 비추어 부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당초 계약서에 이익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형소매점 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 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최신 사례**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A자동차 본사 사건-공정위 의결 제2023-096호(2023. 7. 3.)]**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회사의 자회사인 A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매월 차량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초과)을 대리점에게 부담시켰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와 같은 A회사의 행위를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2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다만,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점법을 적용함)

**3)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의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고, 실제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다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목표 불이행시 실제로 제재하지 않았더라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 주의**

- **강제성이 인정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 목표 달성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수수료 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 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수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최신 사례**

[대법원 2011. 5. 13.선고 2009두24108 판결협력업체들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사례]

A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케이블방송 등의 설치, 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 사건에서 A사는 영업수수료 산정방식이 차등적, 누진적 인센티브제로서 합리적인 영업촉진수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매목표강제'에 있어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의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A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 중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됩니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제공행위**

- (1)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하도록 한 행위
- (2)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 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 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3)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4)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5)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요인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6)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사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상품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한 행위

불리한 납품기한의 설정, 계약의 일방적 해제,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납기지체 일수에 대해서 지체 상금을 부과한 행위

#### - 최신 사례

##### [사례1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 A의 불이익제공 행위]

온라인에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A사가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 인증을 받지 않고 자기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에 대하여 할인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거래상대방인 B를 위하여 B의 경쟁 입점 업체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 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할인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고, 이를 입점 업체에 알리지 않았으며, 해당 입점 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B의 요청에 의하여 할인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서, A사가 입점 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써 입점 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B사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함(공정거래위원회 약식2023-051. 2023. 6. 30.)

##### [사례2 C전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C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알선수수료의 1/2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하여 타전문점으로 이관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C전자의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8억 6,500만원을 부과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069호. 2014. 4. 3.)

#### 5)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 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 · 옹고 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행위는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거래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 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영간섭의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고 시 자기와 사전합의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 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3.3 업무 Check List**

- 1)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 2)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 4) 거래상대방이 거래종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종료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가?
- 5)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6) 물품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거래내용, 대금,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 중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가?
-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 8) 거래 상대방이 조정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 4. 구속조건부 거래

### 4.1 개요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왜 금지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 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 4.2 유형

#### 1)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봉쇄효과, 진입장벽이론)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위급하고 있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독립된 사업자로서 그들의 거래상대방은 자신의 영업능력이거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타 사업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인근 지역판매업자 외의 상표내의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근지역에서는 구입할 수 없게 되어 후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감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예시> H제약사가 도매상들에 대해서 지정 납품처가 아닌 곳의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도매상들을 적발하여 각서를 징구하거나, 경고장 발송, 거래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한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 4.3 최신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016호. 2017. 1. 12.]**

A회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식품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식품대리점의 정도영업 위반행위를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 식품대리점으로 출고된 주요 제품에 대하여 비표를 운영하면서, 정해진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게 차액보상, 매출실적 이관 등의 불이익을 주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를 통해서 식품대리점에게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대리점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고, 식품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마트는 대리점간 가격비교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여 결론적으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302호, 2021. 11. 15.]**

B회사는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하였음

또한 B회사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B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함

**4.4 업무 Check List**

- 1) 회사가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하고 경쟁 사업자는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 않는지?
- 2)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5. 부당지원행위 금지**

**5.1 개요 : 부당지원행위**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①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상품·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는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도 합니다.

**1) 관련 용어**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동일인 관련자를 의미합니다.

- 동일인 관련자

(1)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2) 비영리 법인,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적 영향력(임원 구성, 사업운용 등)을 행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3) 계열회사

(4) 위의 비영리 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 5.2 유형

### 1)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금지원이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저가·고가·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게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계열사는 낮은 금리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계열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 2)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상당한 저가·고가·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실한 계열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중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우량한 계열사가 매입해주는 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계열사의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것은 부당한 상품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의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014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으로, '통행세'라고 부르기도 하는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그러한 자나 회사에게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5.3 위법성 판단 기준

#### 1) 지원행위의 존재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 포함),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합니다.

**문1:** 100%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판결). 대법원은 100%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는 점과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완전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2) 부당성

부당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판결).

#### **이런 행위는 금지됩니다.**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5.4 최신 동향 및 사례

#### 1)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9.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기준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안전지대 항목	기존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
자금지원	정상가격과의 차이 7%미만 & 지원금액 1억원 미만	정상가격과의 차이 7%미만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
자산·부동산·인력지원	없음	정상가격과의 차이 7%미만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
상품·용역 거래 (거래대가 차이)	없음	정상가격과의 차이 7%미만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
상품·용역 거래 (상당한 규모)	없음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 &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부당성	지원금액 5천만 원 이하 & 공정거래저해성 크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1억원 이하 & 공정거래 저해성 크지 않은 경우

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자금지원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가능성이 개선된 것은 물론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심사지침에는 자금지원 외에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대규모 거래로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성 안전지대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사례

### [부당지원이 인정된 사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7466]

A회사는 2009. 9부터 2012. 5. 까지 기업집단이 보유한 편의점 등 점포에 비치하기 위하여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같은 계열사인 B를 거쳐 구매함으로써 B로 하여금 판시 매출이익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됨

### [부당지원이 부정된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처분, 2015. 11. 25.]

C회사는 100% 자회사로서 직영대리점인 D에게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 관리수수료 외에 핸들링 차지(D가 C로부터 추가로 위탁 받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포함시켜 일반대리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D가 일반 대리점과는 다른 추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2%의 관리수수료 차이만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함

## 5.5 업무 Check List

- 1) 계열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였는가?
- 2)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는가?
- 3)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 대상 기업을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지원 대상 기업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구조로 거래하지는 않았는가?
- 4)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 시 시장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거래하거나 현저히 높게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 6.1 개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이는 '사익편취 조항'이라고도 부릅니다. 해당 조항은 2014. 2.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2020. 2.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이 20%(상장불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비율은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직접 보유한 지분이 아닌 두 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6.2 부당지원행위와의 비교

부당한 지원행위와는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당사자는 그 범위가 좁습니다. 두 조항의 차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
관련 규정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법 제47조
규제 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지원 주체	제한 없음(모든 사업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원 객체	제한 없음(모든 사업자)	동일인 또는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 보유한 계열사, 그 계열사가 50%초과 지분 보유한 자회사
금지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하는 거래(통행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예외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경제력 집중의 우려 등 부당성에 대한 입증 필요
제재 대상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지원 객체도 제재 대상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 6.3 행위유형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각호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사익편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사업기회제공행위
- 3) 금융상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4)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소위 일감 몰아주기)

### 6.4 안전지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비하여 부당성이 완화되어 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안전지대'조항입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융상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 차이가 7%미만인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안전지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는 거래조건 차이와 연간거래금액(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평균매출액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6.5 부당성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6.6 최신 사례

[기업집단 H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이익제공행위 에 대한 건]

D항공과 S스카이 간 거래에서 D항공은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S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 판매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S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고, D항공과 U컨버스 간 거래에서 D항공은 U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U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공정위는 D항공이 계열회사인 S스카이 및 U컨버스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D항공(법인)과 조OO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함

### 6.7 업무 Check List

-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2)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3)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지 않았는가?

##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제 [총무, 구매, 리테일]

###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담합'이나 '카르텔'이라고도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제5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직접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제7장에서는 사업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경쟁하여야 할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협조를 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둘 이상의 사업자가 ②합의를 하고 ③그것이 경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2.1 합의

##### 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합의는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며, 적극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묵적 동의만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와 서면합의를 모두 포함하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한 합의일지라도 다른 당사자가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합의추정제도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해당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 횟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담합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1) 원가상승요인도 없고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1) 수요공급 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2) 시장상황에 비추어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는 행위 일치가 어려운 경우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의 일치가 어려움에도 행위가 일치된 경우

## 2.2 경쟁제한성(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조, 거래형태, 경쟁상황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하여야 합니다.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 3.1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부당 공동행위에는 ①가격의 결정·유지·변경, ②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③거래제한, ④시장분할, ⑤설비제한, ⑥상품의 종류·규격제한, ⑦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입찰담합, ⑨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3.2 경성 공동행위

#### 1) 가격 공동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관련 공동행위는 가격의 인상 행위 뿐만 아니라 인하 또는 유지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510판결]

- 합의의 대상이 되는 가격은 판매가·정가·수수료·임대료·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단

#### [라면가격 담합 사례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판결]

- 라면 4개사는 최초로 2001년 5~7월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시한 이래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총 6차례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의 특징이 어려우며, 합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행동 등이 나타나고, 각 업체별 가격의 평균 인상율도 다소간 차이가 있고 개별 상품의 가격 인상폭도 다양하여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를 부인

## 2) 물량 공동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인 물량공동행위는 공급제한 공동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6개 정유회사의 공동행위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8-30호. 1988. 4. 13.]

-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100%를 차지하는 6개 정유회사들이 1981. 1. 1.부터 1982. 6. 30.까지 18개월간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회사별·유종별 시장점유율을 정한 후, 1982. 7. 1.부터 동 기준 시장점유율에 따라 판매물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이를 어기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여 담합유지장치를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3) 시장분할 공동행위

시장분할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업자별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분리하여 정해버리면 사업자 간의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지역분할은 시장을 지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분할은 시장을 청소년·남성·여성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40개 석유대리점의 공동행위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9-17호. 1989. 3. 29.]

- 수도권 일대에서 석유제품을 주유소나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던 40개 석유대리점들은 매주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특정 대리점이 이미 거래하고 있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다른 대리점이 침범하지 않도록 합의하고, 대리점 간의 거래처 침범 등 거래분쟁 사안에 대하여 상호 조정을 한 사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정기회의를 해체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림

## 4) 입찰·경매 공동행위

통상 입찰은 경쟁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서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경매는 경쟁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인 입찰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개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0-158호, 2000. 10. 17]**

- 1998~2000년도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한 국내 5내 정유회사가 각 연도별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전체 입찰유종에 대해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및 들러리 가격, 희망수량경쟁입찰의 투찰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응찰한 사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고발과 함께 121,179,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3.3 연성 공동행위

#### 1) 거래조건 공동행위

거래조건 공동행위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3-20호]**

-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은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 2) 설비제한 공동행위

설비제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설비제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는 ①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②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③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3)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란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 시에 그 상품이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②새로운 상품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6개 출판사의 부당공동행위 사례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8040 판결]**

- 6개 출판사들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자습서 및 카세트테이프의 생산·판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들 영어교재의 규격·체제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시행한 사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법원 역시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 4) 영업수행·관리 공동행위

영업수행·관리 공동행위란 다수의 사업자들이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으로 ①상품의 생산·구매·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참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참가사업자의 제품판매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 및 정보교환 공동행위

기타 사업활동방해·제한 공동행위는 위 8개 유형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제 40조 제1항 제9호).

정보교환행위는 2020. 12. 29. 개정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되었는데, 정보교환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정보교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원가, ②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③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 4. 위반시 제재

### 4.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하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2조).

### 4.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에 대해서 법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있게 되면, 당해 사업자는 공공사업의 입찰에서 배제되므로 심각한 사업상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4.3 과징금

2020. 12. 29.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징금 상한이 상승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3조, 시행령 제13조).

공동행위의 시기는 합의한 날이 되며, 종기는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봅니다. 낙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응찰금액),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봅니다. 낙찰자 이외의 가담자(들러리)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4.4 벌칙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2항).

### 5. 신고자 감면 및 보상제도

#### 5.1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는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워 도입된 제도입니다.

##### 1) 감면제도의 내용

###### (1) 감면대상이 되는 조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조치는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이 해당됩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과징금에 대해서는 의무적 면제 또는 의무적 감경(50%)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의무적 면제, 임의적 감면, 임의적 감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 감면요건 및 기준

- 조사개시 전 최초 신고자 :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고발면제
- 조사개시 후 최초 협조자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면제 또는 감경
- 두번째 신고자 또는 협조자 : 과징금 50%감경, 시정조치 감경

###### (3) 추가 감면제도(Amnesty plus)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제도와는 별도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최초 신고자 또는 최초 협조자의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경우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A공동행위 사건에서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B공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최초 신고자 또는 최초 협조자의 요건을 갖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B공동행위 사건에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고 그와는 별개의 사건인 A공동행위 사건에서도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4) 감면제도 제외 사항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제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강요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자
- 반복행위자
- 2개 사업자 제외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2개의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인 경우 제외
- 기간경과 업자 제외 : 최초신고자 혹은 최초협조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 관련 재판에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 : 감면을 취소할 수 있음

(5) 감면신청 절차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화로는 감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증거자료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과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한 간이신청을 하고 사후에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보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협조와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이 필요합니다

## 5.2 정보누설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공정거래법 제44조 제4항),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하고 있습니다.

## 5.3 신고포상금제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6. 부당한 공동행위 Check List

- 1)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을 하지는 않았는가?
- 2)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는가?

3)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 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는가?

4)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없는가?

## 제5절 대리점법

### 1. 대리점과 대리점법거래의 개념

#### 1.1 대리점거래의 정의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자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리점법 제2조 제1호)

즉 대리점 거래에서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리점 수익(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뿐 아니라, 대리점이 공급업자 소유 상품을 공급업자 대신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도 포함됩니다.

#### 1.2 대리점법 적용대상

##### 1) 원칙

대리점법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대리점과 대리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자세히 하면, 자산총액 5,000억 미만 & 연간매출액 1,000억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회사(중소기업자). 즉,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규모인 대리점은 대리점법 사외 대리점이 아닙니다.

##### 2)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 경우 경우

- (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 (3)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4)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급업자의 의무

#### 2.1 계약서 사전교부 및 작성의무

공급업자는 양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으로 사전에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리점법 제5조 1항 및 제 2항)

-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5) 영업의 양도에 관한사항
-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사항
-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 사항

## 2.2 계약서 제공 의무

공급업자는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 2.3 계약서 보관의무

공급업자는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대리점법 제5조 제3항)

## 2.4 질의 응답

**문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해도 되나요?**

**답 :** 대리점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대리점법 제5조의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야합니다.

당사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유형, 목적, 특약 등 형식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리점 계약 체결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 법무팀에 문의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5 업무 Check List

- 1) 사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였는가
- 2) 계약서 없이 출고 후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는가
- 3) 계약서 작성시 대리점 및 회사의 서명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전자서명 포함)
- 4) 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지는 않았는가?
- 5) 관련서류 (계약서, 감액관련 서류, 담보설정 서류,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을 3년간 보관하였는가?

### 3.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 3.1 개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 6조)

#### 왜 금지되나요?

그 동안 대리점과 관련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 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율하였습니다.

대리점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주문내용 확인요청 거부·회 피와 보복조치 금지에 대하여 금지행위로 규율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행위에 대 하여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2 구입강제행위의 금지

##### 1) 개념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2) 범위반 유형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및 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주문 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공급 물량을 강제적으로 할당한 후, 물품 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 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서 판매하여 원하지 않는 장비의 구입 강제하는 행위
- 남아있는 재고 정리를 위해 주문이 없는데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하는 행위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 하도록 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대리점에게 과대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할당량을 구 입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대리점이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3.3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 1) 개념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7조)

#### 2) 범위반 유형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대리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에 대하여 산출 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또는 향응 요구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도 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 공급업자의 연구비용, 직원 야유회 비용 등을 대리점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

### 3.4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 1) 개념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 8조)

#### 2) 범위반 유형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 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는 행위
- 대리점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 목표액 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하여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판매지역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 3.5 불이익 제공 금지

#### 1) 개념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 8조)

#### 2) 범위반 유형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대리점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 불량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의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 지도록 하는 행위
-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판매물량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담보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 대리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 업무수행에 필 수불가결한 고객 관리용 전산망을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지위 양도승인 등을 거부하는 행위
- 정상거래관행에 비해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로 납품 기한을 설정하는 행위

### 3.6 경영활동 간섭 금지

#### 1) 개념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 10조)

#### 2) 범위반 유형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리점이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소속된 임직원이나 판매원의 선임·해임·계약, 근무·영업지역,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 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등 부 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1) 개념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 11조)

### 3.8 보복조치 금지

#### 1) 개념

공급업자는 대리점법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협조,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제12조)

### 3.9 업무 Check List

구분	법조항	체크사항
발주 및 계약	대리점법 제5조 (대리점 거래 계약서 작성의무)	계약체결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계약서 없이 출고 후 계약서를 교부하 지는 않았는가?
		계약서 작성시 대리점 및 회사의 서명 을 누락하지는 않았는가?
		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지는 않았는가?
서면보관		관련 서류(계약서, 감액 관련 서류, 대금 지급관련 서류 등)를 3년간 보관하였는 가?

구분	법조항	체크사항
구입강제	대리점법 제6조 (대리점)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대리점이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이익제공강요	대리점법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를 한 적이 있는가?
		대리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대리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대리점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대리점에게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구분	법조항	체크사항
판매목표	<p align="center"><b>대리점법 제8조</b> (판매목표강제행위 금지)</p>	<p>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대리점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p> <hr/> <p>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시 지급하는 장 령금이 순수한 인센티브 성격의 유인수 단을 넘어 사실상 대리점의 유통마진에 해당하지는 않는가?</p>
불이익제공	<p align="center"><b>대리점법 제9조</b>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p>	<p>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제 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 공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가?</p> <hr/> <p>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 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p> <hr/> <p>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 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경우 가 있지는 않았는가?</p>
경영활동	<p align="center"><b>대리점법 제10조</b> (경영활동 간섭 금지)</p>	<p>대리점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 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 영에 간섭하지는 않았는가?</p> <hr/> <p>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대리 점의 경영에 간섭하지는 않았는가?</p>
주문내역 확인	<p align="center"><b>대리점법 제11조</b>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p>	<p>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을 회사에서 임의 로 수정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p> <hr/> <p>대리점이 주문내역의 확인요청에 대 하 여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있지는 않 았는가?</p>
보복조치	<p align="center"><b>대리점법제12조</b> (보복조치의 금지)</p>	<p>대리점이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 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p> <hr/> <p>정당한 사유 및 사전예고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지는 않았는가?</p>

## 제6절 하도급법

### 1. 하도급부문 개념

#### 1.1 하도급거래의 정의

##### 1) 개념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 2조 제1항)

#### 1.2 하도급법 적용대상

##### 1) 원칙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대기업 또는 계약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자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가 중소기업에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2) 입법취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 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3) 강행규정

하도급법은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4) 하도급법의 특별법적 성격

하도급법 우선 적용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릅니다.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보다 우선하여 적용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 (법인) 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 2.1 하도급거래의 적용

#### 1) 개념

제조하도급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랜드월드는 “의류”제조를 업으로하는 사업자이므로, “제조 하도급” 관련 내용이 적용됩니다.

#### 2) 적용사례

- 섬유,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샘플),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는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등

#### 3) 적용받지 않는 사례

- 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일반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 받는 경우

### 2.2 기타 하도급거래

#### 1) 건설하도급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있는 공사를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 무등록(무면허), 시공참여자(노무자 및 장비 대여자 등),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법 적용 안됩니다.

#### 2) 용역하도급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 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방송법」 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3) 수리하도급

수리 하도급이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3. 사업자의 의무

### 3.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전의무

#### 1) 서면교부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및 제조 등 위탁 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재사항이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2) 서면교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등

### 3.2 서면 발급 시기

#### 1) 제조 하도급 또는 수리 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건설 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3) 용역 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3.3 기재사항

- 1)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수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탁일과 수급업자가 위탁 받은 것 (이하 "목적물)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3.4 서류보존 의무

#### 1) 의무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9항)

#### 2) 보존 대상 서류

- 제조 등의 위탁 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기본계약서 및 개별계약서, 견적서 등)
-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 수령 증명서
-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 등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 사유
- 하도급대금 감액한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3.5 보존기간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는 7년)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거래가 끝난 날”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계약서의 경우 해당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 7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발주서 등 개별 계약 관련 서면은 해당 개별 계약에 기재된 물품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로부터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3.6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1) 검사기준·방법 및 시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9조 제1항)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무검사 합격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검사결과의 통지

(1)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 9조 제2항)

(2) '정당한 사유'란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거대한 건설공사,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3.7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1)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혹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 13조 제1항)

#### 2)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 (1) 현금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지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연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 13조 제 8항)

## 4. 하도급법상 금지행위

### 4.1 부당한 특약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하도급법 제3조의 4)

계약 조건 설정이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합니다.

#### 1) 부당한 특약 사례

- 원사업자가 교부한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4.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2) 4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별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가 적용됩니다.

#### 3) 판단기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1)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2)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로 판단.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으로 봅니다.

#### 4) 위반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임.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법 제4조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

## 5. 질의응답

### 5.1 사례

1) Q.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바,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 Q.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추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려 면 하도급계약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금 지급 분을 공제한 잔여 기성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A.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미 선급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원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기성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발주 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3) Q.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급금 20%를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 급 계약한 결과, 발주처와 계약한 도급금액의 120%일 경우 선급금 지급은?

A.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하도급 금액에  
발주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4) Q.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

A.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 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하 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5) Q.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여부?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 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 6. 하도급거래 유형별 체크리스트

항 목	법조항	점검사항
입찰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입찰 진행시 재입찰 사유(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를 협력사에게 명시적으로 안내(공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li> <li>- 수급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li> </ul>
발주 및계약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발급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li> <li>- 계약일자가 실제 작업시작(착공)일 이전인가?</li> <li>- 법정 기재사항 누락 시 해당 상황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작업진행 중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li> <li>- 추가·변경공사 작업 착수 전 당사 작업지시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작업 지시서를 발급하였는가?</li> </ul>
특약 검토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설명서의 해당조건이 하도급계약 서면에 내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협력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이 있는가?</li> <li>- 해당 조건이 관련 법령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당사의 부담/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li> <li>- 해당 조건이 당사(발주자 포함)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협력사의 귀책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해 협력사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이 있는가?</li> <li>- 해당 조건이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가?</li> </ul>
발주 취소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는가?</li> <li>- 발주자 또는 당사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는가?</li> <li>- 발주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의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졌는가?</li> <li>- 현장설명서에 당사의 귀책없이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기하고 사전 안내하였는가?</li> </ul>

<p><b>감액 금지</b></p>	<p>하도급법 제11조 (감액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 인하 하였는가?</li> <li>-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li> <li>- 물량축소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교부하였는가?</li> <li>- 당초 계약과 달리 무리하게 납기/공기 단축 후,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li> </ul>
<p><b>대금 지급</b></p>	<p>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5일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는가?</li> <li>- 목적물 수령 후 법정 지급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기간 도과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는가?</li> <li>-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현장의 경우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이 경우, 건설자재를 제조 및 용역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가?</li> <li>- 하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해당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공탁처리 하고 있는가?</li> </ul>
<p><b>하도급대금 조정</b></p>	<p>하도급법 제16조2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가격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는가?</li> <li>-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졌는가?</li> </ul>
<p><b>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b></p>	<p>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가? (예) 공동특허 및 기술개발을 위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승인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경우, 제품의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직접적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등</li> <li>- 당사가 협력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명기된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는가?</li> <li>- 협력사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임의로 기술영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의한 제공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는가?</li> <li>-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목적을 벗어나 당사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협력사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li> </ul>

# 제7절 표시광고법

## 1. 표시광고법 주요개념

### 1.1 표시광고법 용어의 정의

#### 1) 표시(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 중 자기나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자기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상품권, 회원권,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상화된 그 자체의) 용기·포장을 의미합니다.

#### 2) 광고(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 중 자기나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자기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아래 수단/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2. 전단, 팸플릿, 인터넷,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비디오, 음반, 서적, 영화, 연극, 기타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등

### 1.2 주요내용

#### 1) 부당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은 부당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 표시·광고를의 유형은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의미합니다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합니다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경우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의미합니다.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의미합니다

### 1.3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1) 반진실성

반진실성이란, 표시·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조사자료 등 실증자료, 통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 등 근거의 존재 여부 및 사실인지, 은폐/누락, 축소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무과실책임으로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 2) 소비자오인성

소비자오인성이란, 표시·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하며, 전체적 광고의 이미지, 광고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후적으로 오인성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법성 유지됩니다.

#### 3) 공정거래저해성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사업자의 고객 부당 유인, 소비자 피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사안에서 기본적으로 판례와 대부분의 심결례는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저해성을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표시광고법 위반 시 제재

### 2.1 제재 방법

#### 1)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금지 및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이 있습니다.

#### 2)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관련매출액×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이 부과됩니다.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무과실책임으로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 3) 정액과징금

정액과징금(5억 한도)은 광고로 인하여 유발된 매출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됩니다.

#### 4) 형사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2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1) 허위 과장 광고



**“QLED TV 허위 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 만원을 부과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김치냉장고 “FDA 인증...친환경” 거짓광고**

등록 :2019-05-28 12:00수정 :2019-05-28 12:04



안전하고 쓰는 친환경 김치용기

FDA 인증...친환경 김치용기

안전하고 쓰는 친환경 김치용기

안전하고 쓰는 친환경 김치용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 되요! (허위광고)**



블루레몬에이드/레몬에이드  
Blue Lemon Ade / Lemon Ade

신선한 레몬을 통째로 쥬스를 낸 새콤달콤한 레몬에이드

3,900

“통째로”는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레몬 한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시 경제적 대가 지급을 숨기면 안되요! (기망광고)**



과징금 9400만원

B회사는 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의 소개, 추천글을 게재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 2) 부당표시광고 사례 : 생산지 표시

**국내산 모자와 중국산 샌들을 전시한 진열대에 “MADE IN KOREA”라는 표시판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한 거짓·과장광고로 경고조치**



광고표시 내용과 다른 상품들은 **테이블 분리**하여 DP

**경고조치**

“신발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로서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의 여부가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신발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 - 공정위 심결례 중

### 3) 부당표시광고 사례 : 부당비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상품이 경쟁사업자보다 저렴하다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하고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한 거짓·과장 비방성광고로 **행위금지 명령**



**행위금지 명령**

“위와 같은 광고표현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저렴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인 ‘쿠팡’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게 하는 등 비방성이 인정” - 공정위 심결례 中

### 4) 부당표시광고 사례 : 할인판매

**DON'TS!**

**시정명령**

이벤트 기간 동안 1개 예약발권센터 및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53.83%에게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행사 지점 및 대상 소비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 명시해야!

**DOS!**

**할인 대상품목, 할인율 및 급간(아니면 UP TO 또는 최대 표시), 할인대상고객 및 할인기간을 명시**

### 5) 부당표시광고 사례 : SNS 마케팅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지급 사실을 은폐** ⇒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작성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 지급**

#후기인 줄 알았는데 #광고...공정위, SNS 인플루언서 광고 첫 제재

일부 2019.11.25 (14:00) 수후 2019.11.25 (17:02)

과태료 2억6천원

과태료 9400만원

사업자명	대가 지급주체 (광고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대상
오비텍(주)	(주)아이윌레이브	23.5만원	이동 등 2개 블로그 광고(각 10만원) 등 18개 블로그 광고(각 2천원)
아우디특수판매(주)	(주)미래아이앤씨	130만원	이동 등 13개 블로그 광고(각 10만원)
(주)카베네	(주)클렉스	802만원	주요 등 18개 블로그 광고(각 50만원)
(주)비타이온(주)	(주)비타이온(주)	602만원	이동 등 8개 블로그 광고(각 10만원)

### 2.3 표시광고법 체크리스트

부당표시광고 유형		DON'T	DO!
허위,과장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A사 원단 사용”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A사의 해외계열사 B에서 생산한 원단을 사용한 경우”	“B사 (A사 계열사) 원단 사용”
기만적 행위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기능성 운동화를 광고하면서, “운동량 20% 증가한다”고 증거 자료 없이 표시하는 행위	증명가능, 신뢰성 높은 객관적 자료 제시
부당비교	비교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	“독보적” “독점” “oo 능가” “최초” 등 근거없는 최상급/비교 표현사용	“2016년 oo 조사 소비자만족도 1위”
비교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B” 사 “비싸”, “바가지”	객관적·명확한 근거 제시

할인판매 광고 시, ① 실제 할인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하거나, ②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광고, ③ 일부상품의 할인을 대부분 상품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④ 할인특매가 아님에도, 할인 특매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DON'T!**

주의사항	DON'TS!	DOS!
할인을 표시	정가 99,000원, 할인가 50,000원 인데, 50% 할인으로 표시	“A상품 <b>49.5%</b> 할인” “A상품 99,000원 ⇒ <b>50,000원</b> ”
재고수량 관련	“8/1~8/31, A샌들 50% 할인” (‘할인했는데, 재고가 없어서요.’)	“8/1~8/31, A샌들 50% 할인” ( <b>재고 소진 시까지</b> )
할인대상 품목 관련	“○○아동복 50% 세일” (의류는 30~40%, 용품은 50%)	“○○아동복 세일 <b>UP TO 50%</b> ” “용품 50%, 의류 30~40% 세일”
할인대상 품목 관련	“○○ 50% △△ 맞이 특별세일” (일부품목만 할인일 경우)	“○○ 50% △△ 맞이 특별세일” ( <b>일부품목 대상, 또는 일부품목 제외</b> )
할인특매 표시	“상반기 대결산, 8/1~9/1” “창고 대공개 9/1~9/10” (할인판매 아닌 경우)	정상가 판매임을 표시, 또는 ‘대결산’, ‘창고 대공개’ 등 표현 자제

바이럴 마케팅(SNS 등) 시, ① 소비자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추천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②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③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합니다.

주의사항	DON'TS!	DOS!
소비자의 실제 경험한 사실	· 소비자가 실존인물이 아닌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일반소비자인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추천, 보증글 게시한 경우 · 소비자가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광고 (수능만점자 학습지광고)	① 실존인물인 소비자가, ② 본인 명의로 ③ 본인의 실제 사용경험에 입각하여 ④ 본인의 의사로 광고주의 가공 없이 추천 보증해야 함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추천보증을 하면서 건 별로 해당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글의 처음/끝에 큰 글자 또는 다른 색 글씨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정보/홍보성 글로 위장하는 경우	추천·보증의 대가로 현금, 물품을 지 급 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상 응하는 표현을 소비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저는 위 ○○상품을 추천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무료제 품 포함)을 받았습니다.”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 급받고 게시한 글입니다.”

## 제8절 약관규제법

### 1. 약관규제법 주요개념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약관규제법은 거래 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이며 **당사자 간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1.1 약관규제법 개념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방성),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일반성).

### 2. 판단기준

#### 2.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약관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을 뜻합니다

#### 2.2 개별원칙

개별원칙은 ①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②손해배상액의 예정, ③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④채무의 이행, ⑤고객의 권익보호, ⑥의사표시의 의제, ⑦대리인의 책임가중, ⑧소송상권리의 제한으로 구성되며, 이 규정 위반 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3. 개별원칙 금지사항

#### 3.1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 조항입니다

### 3.2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손해의 배상·전보배상·위약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됩니다.

### 3.3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3.4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3.5 고객의 권익 보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상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3.6 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3.7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 3.8 소제기의 금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4. 위반 시 제재

### 4.1 당연 무효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효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봅니다.**

### 4.2 시정사례

#### 약관 조항(예시)

본 서비스 및 Yxxx(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각색,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perform)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가 가능하며, 서브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sublicensable) 라이선스를 Yxxx에 허용합니다.

### 공정위판단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 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 전문 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하여 무효이다.**  
**(약관법 제6조)**

### 2)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약관 조항(예시)
Yxxx는 언제라도 사전 통지 없이 Yxxxx 단독의 재량으로, 본 약관에 위배되는 자료의 제출시,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Yxxxx는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특정 부분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공정위 판단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개별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 등에 대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3)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약관 조항(예시)
Gxxx은 법률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본 약관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기적으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Gxxx은 이에 대한 공지를 게시합니다.
당해 변경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게시하고 14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단,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변경이나 법률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시 발효됩니다.

약관의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변경 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변경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